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2291 제출연월일 : 2024. 7. 26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,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, 해양심층수처리수제 조업자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등에게 부과·징수하는 해양심층 수이용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2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.

제36조의4 전단 중 "제32조(제1항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)"를 "제3 2조(제1항제11호는 제외한다)"로 한다.

제40조부터 제4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52조제3호를 삭제한다.

제54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한다.

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4항제16호를 삭제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허가 등의 취소 등) ① 시	제32조(허가 등의 취소 등) ①
·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제	
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	
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
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	
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	
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	
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	
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	
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	
다.	.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10. 제42조에 따른 부담금증명	<u><삭 제></u>
표지가 없는 먹는해양심층수	
를 판매한 때	
11. (생 략)	11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36조의4(준용규정) 해양심층수	제36조의4(준용규정)
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	
리수수입업에 관하여는 제25조,	
제26조, 제28조부터 제31조까	
지, <u>제32조(제1항제10호 및 제11</u>	<u>제32조(제1항제11호는 제외</u>
<u>호는 제외한다)</u> , 제34조제5항,	한다)
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.	

이 경우 "제24조제1항" 또는 "제33조제1항 및 제2항"은 "제36 조의3제1항"으로, "해양심층수" 또는 "먹는해양심층수"는 "해양 심층수처리수"로, "해양심층수 개발업자" 또는 "먹는해양심층 수제조업자"는 "해양심층수처 리수제조업자"로, "면허"는 "허 가"로, "제27조제1항 및 제2항" 은 "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" 으로, "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" 은 "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" 으로. "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자"는 "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 업자"로, "먹는해양심층수수입 업"은 "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 업"으로. "제27조제1항"은 "제36 조의2제1항"으로, "제27조제5 항"은 "제36조의2제3항"으로 본 다.

제40조(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·징수)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, 먹 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, 해양심 층수처리수제조업자, 해양심층 수처리수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

.
<삭 제>
<u> </u>

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 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이용부담 금(이하 "부담금"이라 한다)을 부과·징수한다. 이 경우 해양 심층수개발업자가 해양심층수 를 이용하여 상업용 목적의 제 품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심층수개발업자를 상 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 입하는 자로 본다.

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을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업무에 사용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
- ③ 부담금은 먹는해양심층수제 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수입 업자에 대하여는 먹는해양심층 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75

- 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부과·징수 하고,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자,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 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 양심층수 평균 공급가격의 1천 분의 1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부 과·징수한다.
-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을 「수산업・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.
- ⑥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.
- 1. 해양심층수 등 해양수산자원 에 대한 연구개발사업
- 2. 해양심층수,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
- 3.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육

성을 위한 사업

- 4. 취수해역에 대한 수질검사등 해양생태계 훼손방지를 위한 사업
- 5. 해양심층수 취수로 인하여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을위한 사업
- 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업
-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41조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.
-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 금의 산정방법과 관련한 평균 판매가격 및 평균 공급가격의 산정방법, 그 밖에 부담금의 부 과・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.

제41조(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

정수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0 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부터 3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 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납부기 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20일 이내에서 정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.
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 ④ 부담금 및 가산금의 세부적인 기준・산정방법 및 부과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증으로 정한다.

제42조(부담금증명표지) ① 해양

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에 대하여 출고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용기에 부담금의 납부 또는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표지(이하 "부담금증명표지"라 한다)를 표시하게 할수 있다.

② 부담금증명표지의 규격·표시방법과 그 밖에 부담금증명표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먹는 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하여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43조(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)

-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부경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춘 자를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부담금증명표 지의 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

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
- 2.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

제52조(청문) 해양수산부장관 또 는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1. 2. (생략)
- 3. 제4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증명표지 제조자 지정의 취소

제5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(倂科)할 수 있다.

- 1. ~ 2의2. (생 략)
- 3. 제4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증명표지 제조자의 지정을 받 지 아니하고 부담금증명표지 를 제조한 자
- 4. 부담금증명표지를 위조・변

 조 또는 재사용하거나 위조

 또는 변조한 부담금증명표지

제52조(청문)
1. · 2. (현행과 같음)
<u><삭 제></u>
제54조(벌칙)
1. ~ 2의2. (현행과 같음)
<u><삭 제></u>

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다 른 사람에게 교부한 자

[별지 제1호서식]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I. 재정수반요인

	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Ī		안 제40조(해양	
	1	심층수이용부담	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규정 삭제
		금의 부과·징수)	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・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	안 제40조(해양심	
1	층수이용부담금	제3호: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
	의 부과·징수)	

2. 상세 사유

O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은 선제적 경기침체 대응 및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하여 '16년부터 지속 부과 면제해 왔으며, 동 부담금을 활용하는 사업이 없으므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예산이나 기금상황에 변화가 없음

Ⅲ. 부대의견

O 해당없음

Ⅳ. 작성자

O 성명

주무관	사무관	과장	실장・국장
김소윤	임진영	강미숙	김용태

O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소윤	044-200-5249	orange007@korea.kr

^{*}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